

약관명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
시행일 : 2024.10.17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보증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별지7] 대출거래약정서(보증자리론용)</p> <h3 style="text-align: center;">대출거래약정서</h3>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p> <p>제1조 거래조건</p> <p>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기본약관 제3조제5항 선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본 약정 제2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td> </tr> </table> <p>제2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p> <p>① <생략></p> <p>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6조 및 고객고지사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사항 -</p> <p>제8조 주택보유수</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또는 공사가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미 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하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통지 도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를 준용합니다.</p>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기본약관 제3조제5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본 약정 제2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p>[별지7] 대출거래약정서(보증자리론용)</p> <h3 style="text-align: center;">대출거래약정서</h3>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p> <p>제1조 거래조건</p> <p>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기본약관 제3조제4항 및 제5항 선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부과하며, 연체(만기경과 또는 연체 이외의 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시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td> </tr> </table> <p>제2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6조 및 고객고지사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2024.10.17일 이후에 실행(채무인수 포함)된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채권이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채무이행 기한이 미도래했을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이자율만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사항 -</p> <p>제8조 주택보유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또는 공사가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미 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하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통지 도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단, 제18조 제2항 단서 중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 채무변제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준용합니다.</p>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기본약관 제3조제4항 및 제5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부과하며, 연체(만기경과 또는 연체 이외의 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시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p>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사항 반영</p> <p>개인채무자 보호법 및 유동화자산 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p>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기본약관 제3조제5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본 약정 제2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기본약관 제3조제4항 및 제5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부과하며, 연체(만기경과 또는 연체 이외의 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시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